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87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양문석・김원이・김현정

이건태 • 이수진 • 문대림

강득구・김 윤・민형배

이정문 • 조계원 • 이기헌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직무만 정지되고 직위는 유지되므로 「공무원 보수규정」상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받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73조의3제1항 등).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69조"를 "제69조, 제73조의3"으로 한다.

제5장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헌법재판소법」 제50 조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고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는 전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3호의 2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의2.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 다만, 대통령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탄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① 특수경력직	제3조(적용 범위) ①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	
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	
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	
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	
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u>제69조</u> , 제84조 및	제69조, 제73조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u>의3</u>
적용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49조의2(권한행사가 정지된 공
	무원의 보수) 「헌법재판소
	법」 제50조에 따라 탄핵소추
	의 의결을 받고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는 전액
	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	
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u><단서</u>	<u>단, 제3</u>
<u>신설></u>	호의 2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야
	<u>한다.</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 <신 설></u>	3의2.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탄핵소추의 의
	결을 받은 자. 다만, 대통령은
	제외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